

1. 개정 이유

「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」이 개정·공포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 부령으로 위임된 처방전 등의 서식, 발급절차, 기재사항 등, 나무의사 보수교육기관 지정기준, 보수교육의 내용·시간·주기, 산불예방 행위제한기간 등을 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진료부, 처방전 등의 서식, 기재사항, 보존기간, 발급절차 등(안 제19조의8, 별지 제10의16호 및 제10의17호)

나무의사가 수목진료를 할 경우 진료부, 처방전 등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을 비롯하여 서식, 보존기간, 발급절차 등을 마련함

나. 나무의사 보수교육의 유예증명(안 제19조의9)

산림청장이 보수교육 이수여부 등의 확인을 위하여 보수교육을 유예한 나무의사에게 유예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

다. 나무의사 보수교육기관 지정기준(안 제19조의10)

강의실, 교육·전담인력 등 나무의사 보수교육기관의 세부적인 지정기준을 정하고자 함

라. 나무의사 보수교육의 내용·시간·주기 등(안 제19조의11)

나무의사가 나무병원에 종사한 날부터 3년마다 보수교육 20시간 이상을 이수하도록 하고, 보수교육의 내용·비용 등 세부적인 사항을 정

하고자 함

마. 산불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 기간(안 제28조제2항)

「산림보호법」 제34조제1항제3호 및 제57조제3항제3호에 따른 풍등 등
소형열기구를 날리는 행위를 산불조심기간(2.1~5.15, 11.1~12.15)
으로 구체화함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의견조회 예정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 : 예정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

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9조의8(처방전 서식 등) ① 법 제21조의12제6항에 따른 진료부와
처방전은 각각 별지 제10호의16서식과 별지 제10호의17서식에 따른
다.

② 나무의사는 진료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. 이
경우 진료부를 진료 연월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.

1. 진료 연월일
 2. 수목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·전화번호
 3. 수목의 표시 : 소재지, 수목의 종류, 본수(면적), 식재년도 또는
수목의 나이
 4. 수목의 상태
 5. 진단
 6. 처방, 처지 등 치료방법
 7. 농약의 품명과 수량(농약을 사용하거나 처방한 경우에 한한다)
- ③ 나무의사는 처방전을 수목 개체별로 발급하여야 한다. 다만, 다
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집단으로 위치하는 수목들

에 대하여 하나의 처방전으로 같이 처방(이하 “집단처방”이라 한다)할 수 있다.

1. 병해충 피해의 확산을 막거나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일 것
2. 처방 대상 수목의 종류가 같을 것(다만, 건습해(乾濕害) 등 비생물적 수목피해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)

3. 피해유형이 같거나 처방하는 농약이 같을 것

④ 나무의사는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후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. 이 경우 처방전 부분(副本)을 처방전 발급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.

1. 진료 연월일, 발급 연월일, 처방전의 유효기간(30일을 초과할 수 없다)
2. 수목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·전화번호
3. 수목의 표시 : 소재지, 수목의 종류, 본수(면적), 식재년도 또는 수목의 나이, 수목의 높이, 흉고직경(胸高直徑)
4. 생육환경 및 관리사항 : 햇빛조건, 토양 견밀도(堅蜜度), 토양 산도(酸度), 토양 습도(濕度), 관리사항 및 기타사항
5. 수목의 상태
6. 진단
7. 처방 : 농약의 명칭, 성분, 용량, 용법, 처방일수(30일을 초과할 수 없다) 등
8. 나무병원의 명칭, 등록번호, 주소, 전화번호

9. 처방전을 작성하는 나무의사의 성명 및 자격번호

⑤ 제4항제1호 및 제7호에도 불구하고 나무의사는 병해충예방을 위하여 같은 농약을 반복 투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정하는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처방전의 유효기간 및 처방일수를 달리 정할 수 있다.

제19조의9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9조의9(보수교육의 유예 증명) 산림청장은 영 제12조의12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유예 사유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수교육을 유예하려는 나무의사에게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19조의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9조의10(보수교육기관 지정기준 등) 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중에서 보수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.

1. 3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강의실을 갖추고 있을 것
2. 수목진료 관련 학과의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강의 또는 실무경력(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의 경력으로 한정한다)이 있는 전임 교수요원을 1명 이상 확보할 것
3. 전임 관리자를 1명 이상 확보할 것

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.

③ 법 제21조의13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기관의 지정취소에 관한 세

부기준은 별표 3의3과 같다.

제19조의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9조의11(보수교육의 기간·내용 등) ① 나무의사는 나무병원에 종사한 날부터 매 3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6개월 사이에 보수교육을 20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.

② 보수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1. 직업윤리에 관한 사항
2. 업무 전문성 향상 및 업무 개선에 관한 사항
3. 수목진료 관계 법령의 준수에 관한 사항
4. 선진 수목진료기술 등 동향 및 추세 등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나무의사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③ 보수교육의 절차·방법에 관한 사항은 보수교육기관이 교육운영계획을 작성하여 산림청장에게 보고한 후 확정하여 운영한다.

④ 보수교육기관은 보수교육 실시 결과를 기록·유지하고 보수교육을 받은 나무의사에게 교육이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.

⑤ 보수교육기관은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 실적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⑥ 보수교육에 필요한 경비는 교육을 받는 자가 부담한다.

제2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는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법 제34조제1항제3호 및 법 제57조제3항제3호에서 “농림축산식

품부령이 정하는 기간” 동안이라 함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산불
조심기간을 말한다.

별표 3의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별지 제10호의16서식 및 별지 제10호의17서식은 각각 별지와 같이 신
설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보수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에 관한 세부기준(제19조의10제3항 관련)

1. 일반기준

가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3년 동안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
나.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(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)의 다음 차수로 한다.

다.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.

2. 개별기준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행정처분기준		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이상 위반
가.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	법 제21조의13제3항 제1호	지정취소		
나.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를 이수한 것으로 처리한 경우	법 제21조의13제3항 제2호	시정명령	시정명령	지정취소
다. 법 제21조의13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	법 제21조의13제3항 제3호	시정명령	지정취소	
라. 법 제21조의14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조사·검사를 거부한 경우	법 제21조의13제3항 제4호	시정명령	시정명령	지정취소

진 료 부

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진료 연월일	년 월 일		[]소유자 []관리자	성명	
				전화번호	

수목의 표시	소재지		수목의 종류	
	본수(면적)		식재년도 또는 수목의 나이	

수목의 상태	잎	
	줄기 및 수간	
	뿌리	

진단결과	
------	--

처방	
----	--

첨부서류

피해사진(근경, 원경)

처 방 전

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진료 연월일		년 월 일		[]소유자		성명					
유효기간				[]관리자		전화번호					
수목의 표시	소 재 지			수목의 종류							
	본수(면적)			식재년도 또는 수목의 나이							
	수목의 높이			흉고직경							
생육환경 및 관리사항	햇빛조건										
	토양 건밀도			토양 산도				토양 습도			
	관리사항 및 기타사항										
수목의 상태	잎										
	줄기 및 수간										
	뿌리										
진 단											
처 방											

이
제
의
이
의
의

나무병원 명칭:	(나무병원 등록번호: 제	호)
나무병원 주소:	(전화번호:	)
나무의사 성명:	(서명 또는 인)	(나무의사 자격번호: 제
		호)

첨부서류	피해사진(근경, 원경)
------	--------------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19조의8(처방전 서식 등) ①</u> <u>법 제21조의12제6항에 따른 진</u> <u>료부와 처방전은 각각 별지 제</u> <u>10호의16과 제10호의17 서식에</u> <u>따른다.</u> <u>② 나무의사는 진료부에 다음</u> <u>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</u> <u>다. 이 경우 진료부를 진료 연</u> <u>월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</u> <u>한다.</u> <u>1. 진료 연월일</u> <u>2. 수목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</u> <u>의 성명·전화번호</u> <u>3. 수목의 표시 : 소재지, 수목</u> <u>의 종류, 본수(면적), 식재년</u> <u>도 또는 수목의 나이</u> <u>4. 수목의 상태</u> <u>5. 진단</u> <u>6. 처방, 처지 등 치료방법</u> <u>7. 농약의 품명과 수량(농약을</u> <u>사용하거나 처방한 경우에</u> <u>한한다)</u> <u>③ 나무의사는 처방전을 수목</u> <u>개체별로 발급하여야 한다. 다</u>

만,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
갖춘 경우에는 집단으로 위치
하는 수목들에 대하여 하나의
처방전으로 같이 처방(이하
“집단처방”이라 한다)할 수 있
다.

1. 병해충 피해의 확산을 막거
나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
경우일 것

2. 처방 대상 수목의 종류가
같을 것(다만, 건습해(乾濕害)
등 비생물적 수목피해의 경
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)

3. 피해유형이 같거나 처방하
는 농약이 같을 것

④ 나무의사는 처방전을 발급
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
사항을 기재한 후 서명하거나
도장을 찍어야 한다. 이 경우
처방전 부분(副本)을 처방전
발급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
야 한다.

1. 진료 연월일, 발급 연월일,
처방전의 유효기간(30일을 초
과할 수 없다)

2. 수목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

의 성명·전화번호

3. 수목의 표시 : 소재지, 수목의 종류, 본수(면적), 식재년도 또는 수목의 나이, 수목의 높이, 흉고직경(胸高直徑)

4. 생육환경 및 관리사항 : 햇빛조건, 토양 견밀도(堅蜜度), 토양 산도(酸度), 토양 습도(濕度), 관리사항 및 기타사항

5. 수목의 상태

6. 진단

7. 처방 : 농약의 명칭, 성분, 용량, 용법, 처방일수(30일을 초과할 수 없다) 등

8. 나무병원의 명칭, 등록번호, 주소, 전화번호

9. 처방전을 작성하는 나무의사의 성명 및 자격번호

⑤ 제4항제1호 및 제7호에도 불구하고 나무의사는 병해충예방을 위하여 같은 농약을 반복투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정하는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처방전의 유효기간 및 처방일수를 달리

<신 설>

<신 설>

정할 수 있다.

제19조의9(보수교육의 유예 증명) 산림청장은 영 제12조의12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유예 사유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수교육을 유예하려는 나무의사에게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19조의10(보수교육기관 지정기준) 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중에서 보수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.

1. 3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강의실을 갖추고 있을 것
 2. 수목진료 관련 학과의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강의 또는 실무경력(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의 경력으로 한정한다)이 있는 전임 교수요원을 1명 이상 확보할 것
 3. 전임 관리자를 1명 이상 확보할 것
-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

<신 설>

보수교육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.

③ 법 제21조의13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기관의 지정취소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3의3과 같다.

제19조의11(보수교육의 기간·내용 등) ① 나무의사는 나무병원에 종사한 날부터 매 3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6개월 사이에 보수교육을 20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.

② 보수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1. 직업윤리에 관한 사항
2. 업무 전문성 향상 및 업무 개선에 관한 사항
3. 수목진료 관계 법령의 준수에 관한 사항
4. 선진 수목진료기술 등 동향 및 추세 등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나무의사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③ 보수교육의 절차·방법에 관한 사항은 보수교육기관이 교육운영계획을 작성하여 산림청

제28조(산불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) ① (생 략) <u><신 설></u> <u>②</u> ~ <u>⑤</u> (생 략)	<u>장에게 보고한 후 확정하여 운영한다.</u> <u>④ 보수교육기관은 보수교육 실시 결과를 기록·유지하고 보수교육을 받은 나무의사에게 교육이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.</u> <u>⑤ 보수교육기관은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 실적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u> <u>⑥ 보수교육에 필요한 경비는 교육을 받는 자가 부담한다.</u> 제28조(산불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) ① (현행과 같음) <u>② 법 제34조제1항제3호 및 법 제57조제3항제3호에서 “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간”이란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산불조심기간을 말한다.</u> <u>③ ~ ⑥ (현행 제2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음)</u>
--	--

